#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8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이만희·박정하·구자근

이달희 · 서천호 · 권성동

박충권 · 김종양 · 서범수

조은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 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 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 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 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3조).

#### 법률 제 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6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			
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			
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u> 처한다.</u>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3조(과태료) ①			
1. ~ 3의2.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u>4</u> .· <u>5</u> .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